

#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소관 : 산업재산조사과]

|   |   |             |                 |
|---|---|-------------|-----------------|
| 제 | 정 | 2011. 9. 30 | 특허청고시 제2011-19호 |
| 개 | 정 | 2016. 2. 15 | 특허청고시 제2016- 3호 |
| 개 | 정 | 2017. 6. 22 | 특허청고시 제2017-13호 |
| 개 | 정 | 2018. 3. 9  | 특허청고시 제2018- 2호 |
| 개 | 정 | 2018. 7. 2  | 특허청고시 제2018-13호 |
| 개 | 정 | 2020. 8. 24 | 특허청고시 제2020-26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
2. 법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피신고인 외에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의 동의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

제3조(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의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피신고인에게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1. 목적·취지 및 내용
2. 제출기한 또는 출석 일시·장소

### 3. 자료제출이나 출석 거부에 대한 제재조치 및 근거 법령

② 조사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방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피·부재·방해 또는 거부 등으로 조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신고인이 동일하거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은 당사자의 자구능력, 피해 구제의 긴급성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 조사관은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조사관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교수, 특허청 심사관·심판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증표의 발급)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관에게 영 제1조의3제3항의 증표를 발급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영 제1조의3제3항의 증표를 발급한다.

제5조(제품의 수거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관리)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접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처리대

장에 작성한다. 다만,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제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제품수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정권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에 따른다.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자(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한다. 다만,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시정권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고발하려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발장(별지 제7호 서식)

2. 조사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진술서(별지 제8호 서식)

4. 상표등록원부 사본(특허청에서 발행한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 및 목록

제8조(의견청취)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권고나 고발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의견청취 시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조사의 종결 등) ① 조사관은 조사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2. 조사 중에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3. 피신고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2. 일시적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4.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은 당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조사관의 조사종결이 있는 후 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조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시정여부의 확인)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정권고의 이행여부 확인은 법 제8조에 따라 정한 시정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시정여부확인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특허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에 관하여 조언·권고·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과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처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년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 또는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예고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하여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보낸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

식의 과태료 부과·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납입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처분과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11-19호, 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016-3호, 2016.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17-13호, 2017.6.22>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호, 2018. 3.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3호, 2018. 7. 2.>

이 고시는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6호, 2020. 8.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고 서

|   |             |           |      |        |                    |  |
|---|-------------|-----------|------|--------|--------------------|--|
| <b>1. 신고인 인적사항</b>  |             |           |      |        |                    |  |
| 신고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주소<br>(주거지) |           |      | e-mail |                    |  |
| <b>2.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조항 :</b>  |             |           |      |        |                    |  |
| <b>3. 신고내용 (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실관계)</b>   |             |           |      |        |                    |  |
| 성명, 상호, 상표 등  |             |           |      |        |                    |  |
| 상 품   |             |           |      |        |                    |  |
| 법위반 사항<br>(사실관계)  |             |           |      |        |                    |  |
| 기타 필요사항   |             | * 첨부자료 참고 |      |        |                    |  |
| <b>4. 피신고인 인적사항</b>   |             |           |      |        |                    |  |
| 업 소 명   |             |           |      |        | 대표자 성명             |  |
| 사업소 소재지<br>또는 주소(거주지)   |             |           |      |        | 연락처 또는<br>사업소 전화번호 |  |
| <b>5. 피신고인과의 관계 : * 예) 하청업체 등</b>   |             |           |      |        |                    |  |
| <b>6. 기타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는 별도 붙임으로 정리 후 제출 요망</b>   |             |           |      |        |                    |  |
| <p>신고인은 위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p> <p>20 . . . . (서명 또는 인)</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특 히 청 장                      귀하</p> <p style="margin-left: 100px;">(지방자치단체장)</p> |             |           |      |        |                    |  |



# 조 사 확 인 서

|  |                       |           |                    |  |             |
|--|-----------------------|-----------|--------------------|--|-------------|
| <b>1. 피 조사인 인적사항 및 관련사항</b>  |                       |           |                    |  |             |
| 사업소<br>(영업소)   | 명 칭                   |           | 사업소 전화번호           |  |             |
|  | 사업소 소재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br>성명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 소<br>(주거지)          |           | 연락처                |  |             |
| <b>2.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상품 (제조, 판매)내역</b>   |                       |           |                    |  |             |
|  |                       |           |                    |  |             |
| <b>3. 법률 위반행위 관련 조사사항</b>  |                       |           |                    |  |             |
|  |                       |           |                    |  |             |
| <b>4. 기타 관련업체(공급업자 등)</b>  |                       |           |                    |  |             |
| 관련업체   | 업 소 명                 |           | 대표 성명              |  |             |
|  | 사업소 소재지<br>또는 주소(거주지) |           | 연락처 또는<br>사업소 전화번호 |  |             |
| 아래 본인은 위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br>20 . . . . .  |                       |           |                    |  |             |
| 확인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업주와의<br>관 계 |
| 조사자 직 · 성명 (서명 또는 인)<br>직 · 성명 (서명 또는 인)<br><br><b style="font-size: 1.2em;">특 허 청 장</b> 귀하<br>(지방자치단체장) |                       |           |                    |  |             |

[별지 제3호 서식]

## 부정경쟁행위 접수대장

| 접수<br>번호 | 접수<br>유형 | 위반<br>조항 | 접수<br>일 | 접수자<br>담당자 | 제보자(신고인 등) |                          |    |    |    | 피신고인      |                          |    |    |    | 위반내용 | 비고 |
|----------|----------|----------|---------|------------|------------|--------------------------|----|----|----|-----------|--------------------------|----|----|----|------|----|
|          |          |          |         |            | 성명/<br>상호  | 침해<br>성명,상호,<br>표장, 상표 등 | 상품 | 전화 | 주소 | 성명/<br>상호 | 침해<br>성명,상호,<br>표장, 상표 등 | 상품 | 전화 | 주소 |      |    |
| 201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 부정경쟁행위 처리대장

| 처리번호<br>(접수대장 번호)  | 위반조항 | 피신고자<br>성명/상호 | 상품 | 침해 성명, 상호,<br>표장, 상표 등 | 위반내용 요지 | 조치내용 |    | 시정여부<br>확인결과 | 비 고 |
|--------------------|------|---------------|----|------------------------|---------|------|----|--------------|-----|
|                    |      |               |    |                        |         | 월 일  | 내용 |              |     |
| 2018-1<br>(201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 제품수거목록

| 수거<br>번호 | 수 거<br>년월일 | 수 거 장 소 |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 상 표 | 제 품 | 수량 | 보관장소 | 처리결과 |
|----------|------------|---------|-------|------------|-----|-----|-----|----|------|------|
|          |            | 상 호     | 영업장주소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권고통지서

|  |                   |                    |  |
|--|-------------------|--------------------|--|
| 업체명  |                   | 사업자<br>등록번호        |  |
| 대표자<br>성명  |                   | 생년월일               |  |
| 사업소<br>소재지   |                   | 연락처 또는<br>사업소 전화번호 |  |
| 시정<br>권고<br>사유<br>및<br>내용  | 1. 시정권고 사유        |                    |  |
|  |                   |                    |  |
|  | 2. 시정권고 내용        |                    |  |
|  |                   |                    |  |
| 시정기한   | 20    년    월    일 |                    |  |
| <p>「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특 허 청 장</b></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장)</p> |                   |                    |  |

# 고 발 장

|                 |  |            |  |             |  |
|-----------------|--|------------|--|-------------|--|
| 1. 피 고 발인 인적사항  |  |            |  |             |  |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 주 소 (주거지) / 본 적 |  |            |  | 연락처         |  |
| 2. 영업사항         |  |            |  |             |  |
| 업체명             |  | 업 종        |  | 사업소<br>전화번호 |  |
| 사업자<br>등록번호     |  | 사업소<br>소재지 |  |             |  |
| 3. 고발사유         |  |            |  |             |  |
|                 |  |            |  |             |  |
| 4. 관련법규         |  |            |  |             |  |
|                 |  |            |  |             |  |

20    년    월    일

고 발 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경찰서장)

# 진 술 서

|  |    |         |  |          |  |
|--|----|---------|--|----------|--|
| 1. 진술인   |    |         |  |          |  |
| 성명   | 외명 | 소속      |  | 직급       |  |
| <p>상기 본인 등은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년    월    일 「부정경쟁 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p> |    |         |  |          |  |
| 2. 피 고발인 인적사항 및 관련사항   |    |         |  |          |  |
| 성명   |    | 성별      |  | 생년월일     |  |
| 주소(주거지)/본적   |    |         |  | 연락처      |  |
| 업체명  |    | 업종      |  | 사업소 전화번호 |  |
| 사업자 번호   |    | 사업소 소재지 |  |          |  |
| 3. 진술내용  |    |         |  |          |  |
|  |    |         |  |          |  |

20    년    월    일

|     |           |
|-----|-----------|
| 진술인 | (서명 또는 인) |
| 진술인 | (서명 또는 인) |
| 진술인 | (서명 또는 인) |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경찰서장)

## 시정여부 확인서

|  |  |             |  |           |                    |      |  |
|--|--|-------------|--|-----------|--------------------|------|--|
| 1. 위반업체 관련사항   |  |             |  |           |                    |      |  |
| 업체명  |  | 사업자<br>등록번호 |  | 대표자<br>성명 |                    | 생년월일 |  |
| 사업소<br>소재지   |  |             |  |           | 연락처 또는<br>사업소 전화번호 |      |  |
| 2. 기 위반 사항   |  |             |  |           |                    |      |  |
| 위 업체는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br>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음. |  |             |  |           |                    |      |  |
| ○ 위반내용 :   |  |             |  |           |                    |      |  |
| 3. 기 시정권고 내용   |  |             |  |           |                    |      |  |
| ○ 시정기한 :       년   월   일까지   |  |             |  |           |                    |      |  |
| ○ 시정할 사항 :   |  |             |  |           |                    |      |  |
| 4. 시정여부확인결과  |  |             |  |           |                    |      |  |

20    년    월    일

확인공무원

(서명 또는 인)





다. 상표별, 상품별 적발물량 현황

(예 시)

| 품 목<br>상 표 | 의류 | 가방류 | 신발류 | 신변<br>장구 | 시계 | 원단 | 부자재 | 금형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구체적 명칭 기재

- 의 류 : 의류, 모자, 양말, 스카프 등
- 신변장구 : 혁대, 악세사리, 열쇠고리 등
- 부 자 재 : 부착용 부품류, 지퍼, 라벨, 태 등

## 과태료처분예고서

| 예고   |             | 제                             |     | 호 |      |
|--|-------------|-------------------------------|-----|---|------|
| 과태료<br>처분대상자   | 성명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 주소<br>(주거지) |                               |     |   |      |
| 위반사항   | 근거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
|  | 위반내용        |                               |     |   |      |
| 과태료<br>금액  | 금액          |                               |     |   |      |
|  | 산출기초        |                               |     |   |      |
| <p>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특허청장(지방자치단체장)</b></p> |             |                               |     |   |      |

## 과태료처분통지서

| 제 호  |                                       |  |     |  |      |  |
|--|---------------------------------------|--|-----|--|------|--|
| 과태료<br>처분대상자   | 성명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  | 주소<br>(주거지)                           |  |     |  |      |  |
| 귀하께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으므로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근거조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  |     |  |      |  |
| 과태료금액  |                                       |  |     |  |      |  |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특허청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b>특허청장(지방자치단체장)</b>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 과태료 부과·수납대장

기관명 : 특허청(지방자치단체)

| 일련<br>번호 | 연월일 | 부과대상자 |         |     | 위반사실 | 금액 | 발 부<br>일 자 | 이 의<br>신 청 | 수 납<br>일 자 | 체 납<br>징 수 |
|----------|-----|-------|---------|-----|------|----|------------|------------|------------|------------|
|          |     | 성명    | 주소(주거지)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   | 주소<br>(주거지) |  |     |         |      |  |
| 과태료<br>처분내역   | 처분통지서<br>번호 |  |     | 통지서 수령일 |      |  |
|   | 과태료<br>금액   |  |     |         |      |  |
| 과태료 처분에 대한<br>불복 사유   |             |  |     |         |      |  |
| 소명자료  |             |  |     |         |      |  |
| <p>「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과 처분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신청인</p> <p style="margin-left: 150px;">(서명 또는 인)</p> <h2 style="text-align: center;">특허청장(지방자치단체장)</h2> |             |  |     |         |      |  |